

# 제168차 학교법인국제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5 인	2 인

1. 일 시 : 2021. 4. 28.(수) 오전 10시 (회의소집 통보일 : 2021년 4월 20일)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 56 국제대학교 중회의실(화상회의)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이사 (5인) : 손신영, 김방, 김홍경, 이혜선, 황인하
- 참석 감사 (2인) : 임안식, 임재현
- 결석 이사 (2인) : 박성배, 황철순
- 결석 감사 (0인) : 없음

4. 안 건

- 가. 2020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결산(안)
- 나. 2020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결산(안)
- 다. 정관 개정(안)
- 라. 기타사항(안)

5. 회의내용

이 사 장 :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로 이사님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 18조 2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간 사 : 성원보고.

이 사 장 : 개회선언.

< 제1호 안건. 2020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결산(안) >

이 사 장 : 제1호 안건인 2020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결산(안)을 상정하고 총무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총 무 팀 장 :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은 법인일반회계 결산 수입, 지출 총액 133,358천원

<간서명>	김 방	김 홍 경	이 혜 선	황 인 하
-------	-----	-------	-------	-------

이며, 법인수익회계 결산 수입, 지출 총액은 517,168천원임을 설명하고 자세한 항목별 결산액은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 안건자료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이 사 장 : 임안식 감사에게 감사보고를 요청하다.

(임안식 감사가 결산 감사보고하다.)

이 사 장 : 이사들에게 회의자료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 제출 요청하다.

(이사들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요 사항 및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 의견을 교환하다.)

황인하 이사 : 2020회계연도 법인회계의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다.

김홍경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김 방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이의 여부 묻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 사 장 : 제1호 안건인 2020회계연도 법인(일반·수익)회계 결산(안)은 법인일반회계 결산 수입, 지출 총액 133,358천원, 법인수익회계 결산 수입, 지출 총액 517,168천원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000

#### < 제2호 안건. 2020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결산(안) >

이 사 장 : 제2호 안건 2020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결산(안)을 상정하고 사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사 무 처 장 : 2020회계연도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를 포함한 교비회계 결산액은 39,048,874천원임을 설명하고 자세한 항목별 결산액은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안건자료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이 사 장 : 임안식 감사에게 감사보고를 요청하다.

(임안식 감사가 결산 감사보고하다.)

이 사 장 : 이사들에게 회의자료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 제출 요청하다.

(이사들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주요 사항 및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 의견을 교환하다.)

황인하 이사 :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제안하다.

<간서명>	김 방	김 홍 경	황 인 하
-------	-----	-------	-------

이혜선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김홍경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이의 여부 묻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 사 장 : 제2호 안건인 2020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결산(안)에 관한 건은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를 포함한 교비회계 결산총액 39,048,874천원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000

< 제3호 안건. 정관 개정(안) >

이 사 장 : 제3호 안건인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고 총무팀장에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총무팀장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조항별로 설명하고 이사들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다.)

[이사들은 일부 조항에 대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은 공감하나, 개정사항의 전부 반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논의하다.]

이 사 장 : 논의 결과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 3주기 기본역량진단평가에도 반영되는 조항들은 원안대로 개정하고, 제37조 및 제37조의2는 추후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다.

황인하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이혜선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이 사 장 : 이의 여부 묻다.

이 사 일 동 : 전원 찬성하다.

이 사 장 : 제3호 안건인 정관 개정(안)은 [별첨]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제37조 및 제37조의2를 제외한 조항을 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000

이 사 장 : 다른 의견 여부를 묻다.

기 획 처 장 : 보고사항으로 202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다.

(이사들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답변하다.)

기 획 처 장 : 보고사항으로 2020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하다.

(이사들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답변하다.)

이 사 장 : 다른 의견 여부를 묻다.

이 사 일 동 : 의견 없음.

이 사 장 : 금일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로 김방 이사, 김홍경 이사, 황인하 이사를 추천하다.

<간서명>	김 방	김 홍 경	황 인 하
-------	-----	-------	-------

김 방 이사 : 동의하다.

김홍경 이사 : 동의하다.

황인하 이사 : 동의하다.

이 사 장 : 제168차 이사회 의사결정자는 김방 이사, 김홍경 이사, 황인하 이사로 선정하고,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한 관계로 회의록 서명과 간서명은 추후에 받는 것을 선언하다.

이 사 장 : 폐회를 선언하다. (10:58)

2021년 4월 28일

학교법인 국제대학교 이사회 이사장	손 신 영	<u>손 신 영</u>
이 사 김 방		<u>김 방</u>
이 사 김 홍 경		<u>김 홍 경</u>
이 사 이 혜 선		<u>이 혜 선</u>
이 사 황 인 하		<u>황 인 하</u>
감 사 임 안 식		<u>임 안 식</u>
감 사 임 재 현		<u>임 재 현</u>

## 2020회계연도 법인(일반)회계 자금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자 금 수 입 현 황					자 금 지 출 현 황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B-A)	비율(%)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A-B)	비율(%)
전입 및 기부수입	102,516	102,000	-516	76.49	보수	-	-	-	-
투자 및 기타자산수입	-	-	-	-	관리운영비	75,862	70,125	5,737	52.58
교육외수입	26,556	26,568	12	19.92	교육외비용	-	-	-	-
고정자산매각 수입	-	-	-	-	전출금	58,000	57,985	15	43.48
고정부채입금	-	-	-	-	예비비	-	-	-	-
기본금	-	-	-	-	고정자산매입 지출	-	-	-	-
					고정부채상환	-	-	-	-
					투자및기타 자산지출	-	-	-	-
미사용전기 이월자금	4,790	4,790	0	3.59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	5,248	-5,248	3.94
계	133,862	133,358	-504	100	계	133,862	133,358	504	100

<간서명>
김병
김홍경
황인하

## 2020회계연도 법인(수익)회계 자금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관 별	예산액 (A)	결산액 (B)	증감 (B-A)	관 별	예산액 (A)	결산액 (B)	증감 (A-B)		
운 영 수 입	매출액	180,750	181,550	800	운 영 지 출	보수	116,000	107,499	8,501
	영업외수입	2,250	2,141	-109		교육외비용	-	-	-
	전입 및 기부수입	60,000	70,000	10,000		전출금	102,516	102,000	516
						예비비	-	-	-
						관리운영비	87,632	82,292	5,340
	계	243,000	253,691	10,691		계	306,148	291,791	14,357
자 본 및 부 채 수 입	투자외 기타 자산	-	-	-	자 본 및 부 채 지 출	투자외 기타 자산	-	-	-
	고정자산매각수입	-	-	-		고정자산매입지출	-	-	-
	자본금 수입	-	-	-		유동부채 상환	-	-	-
	고정부채 입금	8,000	8,000	-		고정부채 상환	20,000	10,000	10,000
	계	8,000	8,000	-		계	20,000	10,000	10,000
미 사 용 전 기 이 월 자 금	기 초 유 동 자 산	269,938	269,938	-	미 사 용 차 기 이 월 자 금	기 말 유 동 자 산	180,329	220,445	-40,116
	기 초 유 동 부 채	-	14,461	14,461		기 말 유 동 부 채	-	5,069	-5,069
	전 기 이 월 자 금 (기초유동자산- 기초유동부채)	255,477	255,477	-		차 기 이 월 자 금 (기말유동자산- 기말유동부채)	180,329	215,376	-35,047
자금수입총계	506,477	517,168	10,691	자금지출총계	506,477	517,168	-10,691		

<간서명>
김 병
김 흥
정
경
환
인
하

## 2020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자금결산 총괄표

(단위 : 천원)

자 금 수 입 현 황								자 금 지 출 현 황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 (B-A)	비율 (%)	관 별	예산액(A)	결산액(B)				증감 (A-B)	비율 (%)
		등록금 회계 (a)	비등록금 회계 (b)	내부거래 제거 (c)	교비합계 (a+b-c)					등록금 회계 (a)	비등록금 회계 (b)	내부거래 제거 (c)	교비합계 (a+b-c)		
등록금수입	23,665,776	23,349,828	305,366	0	23,655,195	-10,581	60.6	인건비(보수)	14,869,787	14,209,041	439,983	0	14,649,024	220,763	37.5
전입금 및 기부수입	10,354,964	0	11,323,631	960,943	10,362,688	7,724	26.5	관리운영비	5,317,742	2,686,048	1,781,089	0	4,467,137	850,605	11.4
교육부대수입	1,527,500	0	1,464,754	0	1,464,754	-62,746	3.8	연구·학생 경비	15,124,041	5,178,393	9,662,648	0	14,841,040	283,001	38.0
교육외수입	257,739	39,305	187,805	0	227,110	-30,629	0.6	교육외비용	70,000	0	68,935	0	68,935	1,065	0.2
투자외 기타자산	726,633	0	726,635	0	726,635	2	1.9	전출금	0	960,943	0	960,943	0	0	0.0
고정자산매각	0	0	0	0	0	0	0.0	예비비	39,242	0	0	0	0	39,242	0.0
유동부채입금	0	0	0	0	0	0	0.0	투자외기타 자산지출	66,774	0	66,773	0	66,773	1	0.2
고정부채입금	0	0	44,104	0	44,104	44,104	0.1	고정자산 매입지출	782,250	282,688	484,843	0	767,531	14,719	2.0
								유동부채상환	921,164	0	921,164	0	921,164	0	2.4
								고정부채상환	310,000	0	5,000	0	5,000	305,000	0.0
미사용전기 이월자금	2,568,388	437,511	2,130,877	0	2,568,388	0	6.6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1,600,000	509,531	2,752,738	0	3,262,269	-1,662,269	8.4
계	39,101,000	23,826,644	16,183,172	960,943	39,048,874	-52,126	100	계	39,101,000	23,826,644	16,183,173	960,943	39,048,874	52,126	100

<간서명>
김영
김홍경
황인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 (회계의 구분) ① ~ ③ (생략) (신설)</p> <p>(신설)</p>	<p>제9조 (회계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하고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구분하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진출·대여 하거나 목적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li> <li>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li> </ol>
<p>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법인 및 산하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p>	<p>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법인 및 산하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li> <li>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li> <li>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li> <li>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사람</li> </ol>
<p>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② (생략)</p> <p>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p>	<p>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p>

<간서명>

김민호

김충영

황인하

<p>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p> <p>④ ~ ⑧ (생략)</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당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p> <p>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p> <p>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p> <p>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6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3(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외부인사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4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원 5명</p> <p>2. 직원 5명</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3.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명</p> <p>4. 외부인사 2명</p> <p>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1조의3(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u>조교</u>·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외부인사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5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원 5명</p> <p>2. 직원 5명</p> <p>3. <u>조교</u> 1명</p> <p>4. <u>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2명</u></p> <p>5. <u>외부인사 2명</u></p> <p>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1조의4(평의원의 위촉) ① 평의원 중 교원은 대학 전체교수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② 평의원 중 직원은 전체직원회의로부터 추천</p>	<p>제31조의4(평의원의 위촉) ① 평의원 중 교원은 대학 전체교수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② 평의원 중 직원은 전체직원회의로부터 추천</p>

<간서명>      김    영      김    총    영      황    인    하

<p>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u>신설</u>)</p> <p>③ 평의원 중 학생은 학생회로부터 추천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④ 평의원 중 외부인사는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③ <u>평의원 중 조교는 전체조교회의로부터 추천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u></p> <p>④ 평의원 중 학생은 학생회로부터 추천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⑤ 평의원 중 외부인사는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p>
<p><b>제39조 (임용)</b>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중임한다. (<u>신설</u>)</p> <p>② ~ ⑥ (생략)</p>	<p><b>제39조 (임용)</b>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중임한다. <u>단, 내부 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임용을 원할 경우에는 교원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되어야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b>제40조 (휴직)</b> ① (생략)</p> <p>1 ~ 10.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② (생략)</p>	<p><b>제40조 (휴직)</b> ① (현행과 같음)</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12.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p> <p>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41조 (휴직기간)</b>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p> <p>6의2 ~ 9. (생략)</p>	<p><b>제41조 (휴직기간)</b>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p> <p>6의2 ~ 9. (현행과 같음)</p>

<간서명>      김  우  보      김  홍  정      권  인  하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b>제44조 (직위해제) ① (생략)</b> 1 ~ 3. (생략) (신설)	<b>제44조 (직위해제) ① (현행과 같음)</b> 1 ~ 3. (현행과 같음) 4. <u>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u>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b>제44조의2 (면직) ① (생략)</b> 1 ~ 5. (생략) (신설)	<b>제44조의2 (면직) ① (현행과 같음)</b> 1 ~ 5. (현행과 같음) 6.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u>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b>제58조 (징계의결의 기한)</b>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b>제58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b>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b>제62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b>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b>제62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b>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간서명> 김 오영 김 총 영 광 인 하

# 국제대학교 2022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현황

대계열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비고	
	모집단위 (학부, 학과명)	수업 연한	입학 정원	모집단위 (학부, 학과명)	수업 연한	입학 정원		
공학	드론자동차학과	2년	80	드론자동차운용학과	2년	65	학과명 변경, 감원(15)	
	기계공학과	2년	60				모집 중단, 감원(60)	
	항공정비학과	3년	75	항공정비기술학과	3년	65	학과명 변경, 감원(10)	
	산업안전학과	2년	60				모집 중단, 감원(60)	
	컴퓨터공학과	3년	80	컴퓨터융합학부				학부 신설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3년	60	학과명 변경, 전공 전환, 감원(20)	
				e-스포츠게임전공	3년	30	신설(30)	
				e-크리에이티브전공	3년	35	신설(35)	
				e-커머스전공	3년	35	신설(35)	
의료IT학과	3년	60				모집 중단, 감원(60)		
소방안전관리학과	3년	60	소방안전관리학과	3년	60			
<b>소계</b>	<b>7</b>		<b>475</b>	<b>4</b>		<b>350</b>	<b>감원(125)</b>	
자연과학	간호과	3년	40	간호학과	4년	40	4년제 전환	
	안경광학과	3년	53	안경광학과	3년	53		
	호텔외식조리학과	2년	80	호텔조리학과 (외식조리전공, 제과제빵전공)	2년	70	학과명 변경, 세부 전공 표기, 감원(10)	
				반려동물학과	3년	50	신설(50)	
				스포츠헬스케어학과	2년	60	신설(60)	
<b>소계</b>	<b>3</b>		<b>173</b>	<b>5</b>		<b>273</b>	<b>증원(100)</b>	
인문사회	보건의료행정학과	2년	65	보건의료행정학과	2년	55	감원(10)	
	사회복지학과	2년	70	사회복지학과	2년	60	감원(10)	
	상담심리치료학과	3년	60	상담심리치료학과	3년	55	감원(5)	
				항공관광학부			학부로 통합	
	항공서비스학과	2년	70	항공서비스전공	2년	50	전공 전환, 감원(20)	
	호텔관광학과	2년	70	호텔관광전공		60	전공 전환, 감원(10)	
	유아교육과	3년	40	유아교육과	3년	40		
	군사학과	2년	70	군사학과 (육군부사관전공, 해군부사관전공)	2년	70	세부 전공 표기	
	경호보안학과	2년	71	경호보안학과	2년	56	감원(15)	
				미래융합교육학부			학부 신설	
				사회복지상담전공	2년	20	신설(20)	
			부동산경제중개전공	2년	20	신설(20)		
			외식프랜차이즈창업전공	2년	20	신설(20)		
<b>소계</b>	<b>8</b>		<b>516</b>	<b>8</b>		<b>506</b>	<b>감원(10)</b>	
예체능	산업디자인학과	2년	65				학과명 변경, 3년제 전환, 감원(65)	
				시각애니메이션콘텐츠학과	3년	55	학과명 변경, 3년제 신설(55)	
	e-패션학과	2년	65				모집 중단, 감원(65)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년	65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학부로 전환, 증원(45)
				피부케어전공	2년	55	신설(55)	
				메이크업네일전공	2년	55	신설(55)	
	엔터테인먼트학부			엔터테인먼트학부				
	K-POP전공	3년	60	K-POP전공	3년	60		
	실용댄스전공	3년	50	실용댄스전공	3년	50		
	연예기획마케팅전공	3년	40	연예기획마케팅전공	3년	40		
모델연기학부			공연예술학과			학과 전환, 학과명 변경		
연기전공	2년	50	연기전공	2년	45	감원(5)		
모델전공	2년	50	모델전공	2년	45	감원(5)		
<b>소계</b>	<b>5</b>		<b>445</b>	<b>4</b>		<b>405</b>	<b>감원(40)</b>	
<b>합계</b>	<b>23</b>		<b>1,609</b>	<b>21</b>		<b>1,534</b>	<b>감원(75)</b>	

<간서명>
김민아
김민아
김민아

## 2020회계연도 교비(등록금·비등록금)회계 예산 전용 명세서

(단위:원)

회계구분	구분			2020예산액 (2차 추경)	전용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관	항	목		증	감			
등록금	관리운영비	운영비	일반용역비	186,500,000	0	-19,000,000	167,500,000	165,370,000	2,130,000
			일반관리비	9,535,000	19,000,000	0	28,535,000	28,082,150	452,850
비등록금	연구학생경비	입시관리비	입시경비	176,000,000	0	-24,500,000	151,500,000	151,290,782	209,218
		학생경비	교외장학금	9,094,220,000	24,500,000	0	9,118,720,000	9,118,464,434	255,566
합계				9,466,255,000	43,500,000	-43,500,000	9,466,255,000	9,463,207,366	3,047,634

<간서명>	김 오 영	김 흥 영	함 인 하
-------	-------	-------	-------